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0700016
신청인: 주식회사 넷피아닷컴
피신청인 : 김수진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주식회사 넷피아닷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KOAMI빌딩 신관 11층

피신청인: 김수진,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917-1

분쟁도메인이름은 “넷피아주소.com(XN--T60BT32AUXC2YE77S.COM)” 및
“넷피아한글인터넷주소.com(XN--BJOBZ4DBA838NGLEZYDW9C7XYKSIGJA.COM)”
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사이덴터티(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26 성문빌딩 6층)” 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의 2007년 2월 8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
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2월 8일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7년 2월 8일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07년 2월 9일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07년 2월 9일 센터는 “신청서 전송 표지” 를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등기우편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을 2007년 3월 4일(일요일)임을 통지하였다.

2007년 3월 5일(월요일)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3월 8일 센터는 양당사자에게 조정인 후보 명단을 제공하였고 양당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로서 김종윤 조정위원을 선임하였고 조정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조정부를 2007년 3월 21일 구성하였다.

2007년 4월 27일 조정부는 절차규칙 제12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추가 진술서류 제출을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2007년 5월 4일 제출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소프트웨어솔루션,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¹⁾ 등 각종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신청인은 그가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들과, 관련 서적, 간행물, 카탈로그,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NETPIA”, “네티피아”, “네티피아한글인터넷주소” 에 대하여 다수의 상표등록 및 서비스표 등록을 받아 두었다.

1)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는 ‘한글도메인이름서비스’와 ‘한글키워드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도메인이름’과 ‘키워드’는 그 기술적인 면과 그 서비스 범위에 있어서 서로 크게 다르다. 이에, 이하에서는, ‘한글도메인이름서비스’와 ‘한글키워드서비스’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공하는 한글키워드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인 ‘네티피아한글인터넷주소.com’ 과 ‘네티피아주소.com’ 을 각각 2006. 12. 27 및 2007. 1. 6. 등록받아, 이들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의 등록이 신청인에게 이전될 것을 구하고, UDRP 제4조(a)의 요건들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신청인이 상표 및 서비스표로 등록받은 표장들인 “네티피아,” “네티피아한글인터넷주소” 등과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인 “네티피아한글인터넷주소.com” 및 “네티피아주소.com” 을 대비하면, 이들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 따라서 UDRP 제4조(a)(i)의 요건이 충족된다.

(2) 신청인의 상표이자 서비스표인 “네티피아” , “네티피아한글인터넷주소” 등은 신청인의 서비스나 상품을 타사의 서비스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사용되어 온 표장들이다. 피신청인은 이들 상표 및 서비스표와 전혀 무관한 자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이다. 따라서 UDRP 제4조(a)(ii)의 요건이 충족된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신청인의 웹사이트인 줄 알고 방문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음해성 글을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의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의 주지, 저명성을 혼동, 희석, 손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UDRP 제4조(a)(iii)의 요건이 충족된다. 피신청인은, 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의 사용이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Legitimate Noncommercial Use) 또는 공정한 사용(Fair Use)에 해당하여, 그에게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듯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첫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그의 한글키워드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한글키워드서비스에 대한 등록약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²⁾ 신청인이 그 이용자들에게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com”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gTLD인 만큼, “.com”도메인들인 이 사건도메인이름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이나 ‘공정한 사용’의 항변이 적용될 수 없다.

셋째,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한 이 사건도메인이름들을 인터넷주소 창에 타이핑하는 사람들은 신청인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것을 의도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청인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이들이 신청인회사의 진정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지 않거나 꺼리게 된다면, 이는 최초이익의 혼동(Initial Interest Confusion)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신청인이 그 웹사이트에 신청인의 홈페이지가 아니라는 부인문구를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

넷째, 신청인을 비평할 권리는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손상시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신청이 기각될 것을 구한다. 피신청인은 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이 부정한 목적에 기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의 사용이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이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피신청인이 내세운 이유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을 등록받아 웹사이트를 개설한 이유는

2) 신청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등록약관 제16조 제2호, 제4호에 “넷피아의 합리적인 통제력을 넘어선 사건 발생” 또는 “인터넷주소에 관한 주변 환경과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한 서비스 중단 등의 사태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청인의 한글키워드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많은 수요자에게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한글키워드서비스에 관하여 수요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주된 정보는 신청인의 한글키워드서비스 범위에 관한 것으로, 2001년경에는 신청인의 서비스범위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90%에 달하였으나, 2005년경 하나로텔레콤을 통한 서비스가 중단되고, 2007년 초경 KT를 통한 서비스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서비스 범위가 2007년 1월경 우리나라 시장의 30%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보는 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러한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등록 및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그러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둘째, 피신청인이 개설한 웹사이트의 가장 첫머리에 “(주)넷피아닷컴에서 만든 홈페이지가 아님” 및 “개인 홈페이지임” 이라고 명기함으로써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자가 그 웹사이트를 신청인회사의 웹사이트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신청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관련 있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이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것이며, 또한 2006. 12. 27 및 2007. 1. 6. 당시 이들 도메인이름이 등록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 받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A.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 이름의 유사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등록들인 “넷피아,”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와 이 사건 도메인 이름들에서 gTLD를 표시하기 위한 접미어인 .com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인 “넷피아한글인터넷주소,” 및 “넷피아주소” 를 대비하면 이들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있어서 UDRP 제4조(a)(i)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인정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그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Legitimate Noncommercial Use) 또는 공정한 사용(Fair Use)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들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주장한다.

UDRP 제4조(c)는 피신청인에게 당해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몇 가지 상황들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피신청인이 그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수요자를 오인시키거나 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 없이, 당해 도메인 이름을 정당하게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³⁾

피신청인은 그가 이 사건 도메인 이름들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도메인 이름들에 대하여 그에게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하

3) UDRP 제4조(c) (iii): You are making a legitimate noncommercial or fair use of the domain name, without intent for commercial gain to misleadingly divert consumers or to tarnish the trademark or service mark at issue.

에서는,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이 UDRP 제4조(c) (iii)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의 한글키워드서비스는, 도메인주소와는 달리, 매년 인터넷망 공급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인터넷망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인터넷망 환경 내에서 또는 플러그인(plugin)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신청인이 얼마나 많은 인터넷망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유지하는지가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인터넷망이 적으면, 신청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들로서는 그들의 한글키워드가 통용되는 인터넷망이 그만큼 협소해지기 때문이다.

피신청인은, 2001년경에는 신청인의 한글키워드서비스범위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90%에 달하였으나, 2005년경 하나로텔레콤을 통한 서비스가 중단되고, 2007년 초부터 KT를 통한 서비스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서비스 범위가 근자에는 우리나라 시장의 30%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이러한 주장 내용은 언론에 게재된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다투지 않는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한글키워드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가 이용하는 한글키워드의 서비스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한편으로, 이러한 한글키워드서비스에 대한 등록비용이나 유지비용은 그 서비스범위와 연동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한글키워드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 범위를 수요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들로서는 그 서비스 범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신청인은, 신청인과 이용자 사이의 계약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한글키워드서비스에 대한 등록약관에 “네티피아의 합리적인 통제력을 넘어서는 사건 발생” 또는 “인터넷주소에 관한 주변 환경과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한 서비스 중단 등의 사태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신청인이 그 이용자들에게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약관에 “네티아의 합리적인 통제력을 넘어서는 사건 발생” 또는 “인터넷주소에 관한 주변 환경과 국내, 외적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한 서비스 중단 등의 사태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등록약관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책임이 면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면, 서비스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에 관하여, 신청인으로서의 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에 그러한 정보를 신속히 알려 수요자들이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러한 정보를 알림에 있어서도 그 전 후 사정 및 향후 방향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 그리고 서비스 범위가 심각하게 축소된 것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신청인은 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KT와 헤어지게된 것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KT 회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한글인터넷주소 도우미 설치’ 및 ‘네티아 통합 툴바 설치’ 등을 권하고 있으나, 그 내용들은 신청인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에 그치며, 수요자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설명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운영이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일일이 통보하고, 보상책을 자진하여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무리이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 중의 일부가 그러한 정보를 먼저 입수하여 다른 수요자들과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까지 막을 권한은 없다고 하겠다.

피신청인이 그에게 그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도메인이름을 오직 정당하게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⁴⁾ 피신청인이 개설한 웹사이트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 신청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비난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그 주된 내용들은 신청인의 서비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것으

4)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질에 있어서 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인정되면, 피신청인에게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Skattedirektoratet v. Eivind Nag*, WIPO Case No. D2000-1314 참조

로, 신청인이 수요자들에게 알렸어야 할 사항, 신청인이 수요자들에게 행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 또는 그의 영업 활동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제작한 이유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바로 잡는 것’ 과 ‘서비스범위의 축소 등 서비스 등록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 이라 밝힌 바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로부터 볼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의 웹사이트에 내용들에 기초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의 사용은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이 “.com” 도메인이고, “.com” 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gTLD인 만큼, 이 사건도메인이름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이나 ‘공정한 사용’ 의 항변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gTLD 도메인이름 종류들 중에서 “.com” 도메인이름들이 주로 기업들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위 주장에 일면의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UDRP 제4조 (c) (iii)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피신청인의 이익은, 일종의 공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gTLD의 종류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UDRP 제4조(c)(iii)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그 분쟁도메인이름이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피신청인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WIPO Case No. D2000-0190 *Bridgestone Firestone, Inc., Bridgestone/Firestone Research, Inc., and Bridgestone Corporation v. Jack Myers* 참조]⁵⁾

5) WIPO Case No. D2000-0190 *Bridgestone Firestone, Inc., Bridgestone/Firestone Research, Inc., and Bridgestone Corporation v. Jack Myers* 사건에서, 패널은 미국 제2연방순회법원 사건인 *Name.Space, Inc. v. Network Solutions Inc.* 202 F.3d 573, 585 (2d Cir.2000)의 판결을 인용하여, 도메인이름의 종류에 따라 UDRP 제4조 (c) (iii)의 적용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미국 제2연방순회법원은 “Domain names . . . per se are neither automatically entitled to nor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the First Amendment, and the appropriate inquiry is one that fully addresses particular circumstances presented with respect to each domain name” 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인 “네파아한글인터넷주소” 및 “네파아주소”에 대하여 각각 2006. 12. 27 및 2007. 1. 6 등록 받았는데, 이 등록시점들은 신청인이 한글키워드서비스를 시작한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한 때이고, 또한 신청인은 그의 홈페이지를 위하여 이미 다른 도메인이름들을 등록받아 오랜 기간 사용해 오고 있다. 한편, 신청인은 도메인이름 등록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도메인이름등록 대행기관으로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이 등록되기 전에 그 도메인이름들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지 않았는바,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이 신청인에게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도메인이름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의 등록이 신청인의 필요한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할 목적 또는 그 외 다른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com” 도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UDRP 제4조(c)(iii)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을 URL 창에 타이핑하는 사람들은 신청인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것을 의도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청인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이들이 신청인회사의 진정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지 않거나 꺼리게 된다면, 이는 최초이익의 혼동(Initial Interest Confusion)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도메인이름 분쟁은 대부분 타인의 상표나 서비스표를 도메인이름의 주요부로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것인 만큼,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당해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영업상 이익과 충돌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UDRP 제4조 (c) (iii)의 취지는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타인(상표권자 등)의 영업적 이익과 충돌되는 경우에도, 그 도메인이름 사용이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이나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여 언론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도메인이름 사용이 타인의 영업적 이익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⁶⁾

6) 언론의 자유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이익이나 권리를 손상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보장하는 것이 아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피신청인이 그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인의 한글 키워드서비스에 관하여 수요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주된 정보는 신청인의 한글키워드서비스 범위가 축소된 것에 관한 것으로, 신청인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려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그의 웹사이트의 가장 첫머리에 “(주)넷피아닷컴에서 만든 홈페이지가 아님” 및 “개인 홈페이지임” 이라고 명기함으로써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자가 그 웹사이트를 신청인회사의 웹사이트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의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신청인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나아가 신청인회사의 진정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지 않거나 꺼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UDRP 제4조(c)(iii)의 적용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청인은, 신청인을 비평할 권리는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손상시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관하여 정당한 비판을 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관련 수요자들에게 알리지 위해서는 신청인의 서비스와 관련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하다. 만일 신청인의 서비스와 전혀 무관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면, 수요자들에게 그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를 알리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정확한 정보 전달을 거의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⁷⁾ 이와 같은 이유로, UDRP 제4조(c)(iii)는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과의 저촉 주장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그의 웹사이트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제공하는 한글키워드서비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 UDRP 제4조(c)(iii)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이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이 진정한 사실이라면, 그로 인하여 그 웹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응당 감수해야 할 사항이므로, 그러한 점을 들어 UDRP 제4조(c)(iii)의 적용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하겠다.

- 7) 도메인이름 분쟁에 있어서, 피신청인들은 개인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개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정확한 정보 등을 관련 수요자들에게 알림에 있어서,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와 전혀 무관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이는 신청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실질적으로 금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인용한 WIPO Case No. D2000-0190 사건에서, 패널은 *Bally total Fitness Holding Corp. v. Faber*, 29 F.Supp.2d 1165, 1167 (C.D. Cal. 1988)의 판결을 인용하였는데, 위 미국 법원의 판시내용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Faber is using Bally's mark in the context of a consumer commentary to say that Bally engages in business practices, which Faber finds distasteful or unsatisfactory. This is speech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 . . As such, Faber can use Bally's mark to identify the source of the goods or services of which he is complaining. the use is necessary to maintain broad opportunity for expression.”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살펴 본 사항들에 기초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들의 사용은 UDRP 제4조 (c) (iii)의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있어서 UDRP 제4조(a) (ii)의 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UDRP 제4조(b)는 당해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를 열거하면, 첫째, 피신청인이 상표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그의 경쟁자에게 당해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직접 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고 판매, 대여,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둘째, 피신청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피신청인이 그러한 방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셋째, 피신청인이 경쟁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표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 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의 웹사이트에 신청인에 대한 음해성 글을 게재하여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할 뿐,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의 사용이 위 UDRP 제4조(b)에 예시된 상황들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한편, 쌍방이 제시한 관련 주장 및 증거들에 기초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은 위 UDRP 제4조(b)에 예시된 어떠한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의 등록 및 사용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이 개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있어서 UDRP 제4조(a) (iii)의 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정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은 신청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의 사용이 정당한 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패널은 이 사건 조정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김 종 윤
1인 조정부

결정일: 2007년 5월 16일